

「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민 우선 예약을 확대하여 구미시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외부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민 우선 예약 확대(안 제5조의2 제3항)
 - (당초) 숲속의 집 5개동 → (변경)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15개소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
 -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 및 제28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옥성면에 위치한 옥성자연휴양림의 구미시민 우선예약 객실 수를 기존 5개 동에서 15개 동으로 확대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구미시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정주여건 및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, 휴양림을 이용하려는 타 지역 관광객의 유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우선 예약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 외부지역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구미시 전입 혜택에 대한 현장 안내 및 홈페이지 공고 등의 홍보활동 실시로 조례 개정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